



제428회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자기주식 소각에 따른 주식보유 한도 초과 시 유예기간 부여〉

- 윤한홍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756호)
- 윤한홍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758호)
- 윤한홍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759호)
- 윤한홍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765호)

2025. 8.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 명 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1.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
2.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1
3.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
4.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
1.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
2.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3
3.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3
4.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III . 검토의견	6

I. 제안경위

1.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 안 자: 윤한홍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2025. 6. 12.

다. 회 부 일: 2025. 6. 13.

2.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 안 자: 윤한홍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2025. 6. 12.

다. 회 부 일: 2025. 6. 13.

3.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 안 자: 윤한홍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2025. 6. 12.

다. 회 부 일: 2025. 6. 13.

4.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 안 자: 윤한홍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2025. 6. 12.

다. 회 부 일: 2025. 6. 1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보험회사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회사를 제외하고는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다른 회사가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보험회사가 소유한도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해 주식을 지체 없이 처분하는 과정에서 주가의 하락으로 당초 의도한 주주가치의 제고 및 밸류업이 달성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다른 회사의 자사주 소각으로 보험회사가 한도를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주식에 대하여는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는 유예기간을 두는 한편, 한도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함으로써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 제한 규제와 밸류업 정

책이 단기적으로 상충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안 제109조의2 등).

2.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동일인 또는 비금융주력자가 보유할 수 있는 은행 주식의 한도를 정하고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 주식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두고 사후 승인을 받거나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처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은행이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주식보유자가 보유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지체 없이 처분하는 과정에서 주가의 하락으로 당초 의도한 주주가치의 제고 및 밸류업이 달성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동일인 또는 비금융주력자가 보유하고 있는 은행 주식 비율이 은행의 자사주 소각으로 보유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는 유예기간을 둬으로써 자사주 소각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고, 출자 제한 규제와 밸류업 정책이 단기적으로 상충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안 제16조 등).

3.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동일인 또는 비금융주력자가 보유할 수 있는 은행지주회

산 주식의 한도를 정하고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 주식으로 전환되는 경우 등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예기간을 두고 사후 승인을 받거나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처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은행지주회사가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주식보유자가 보유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지체 없이 처분하는 과정에서 주가의 하락으로 당초 의도한 주주가치의 제고 및 밸류업이 달성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동일인 또는 비금융주력자가 보유하고 있는 은행 주식 비율이 은행지주회사의 자사주 소각으로 보유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는 유예기간을 둠으로써 자사주 소각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적 환경을 만들고, 출자 제한 규제와 밸류업 정책이 단기적으로 상충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안 제10조 등).

4.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금융기관을 이용한 기업결합을 제한하기 위하여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 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음. 다만, 다른 주주의 감자(減資)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사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기업들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기주식을 소각하고 싶어
도 지분 제한 규정으로 인해 소극적으로 임하거나, 동일계열 금융기관
이 주식소유한도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해 보유주식을 지체 없이 매도
하는 과정에서 주가 하락이 발생하는 등 당초 의도한 밸류업이 달성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주식 비율이
그 회사의 자사주 소각으로 인해 소유한도를 넘게 되는 경우 사후 승
인을 받거나 소유한도에 적합하도록 하는 유예기간을 명시함으로써
자사주 소각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고,
출자 제한 규제와 밸류업 정책이 단기적으로 상충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안 제24조, 제24조의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자기주식 소각으로 인해 각 법률에서 정하는 주식보유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을 수 있도록 하거나, 한도에 적합하도록 조치해야하는 기간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로 하여 유예기간을 부여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설>	제109조의2(의결권 제한 등) ① 제109조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소유한 보험회사는 그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보험회사는 제109조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회사가 자기주식을 소각함에 따라 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한도를 초과하여 소유하게 된 사

현행	개정안
제209조(과태료) ① 보험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u>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것</u> 2.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109조에 따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할 것
1. ~ 5. (생략)	제209조(과태료) ① ----- ----- ----- --.
6. 제109조를 위반하여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	1. ~ 5. (현행과 같음) 6. 제109조 또는 제109조의2----- ----- -
7. ~ 18. (생략)	7. ~ 18.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보험회사의 발기인·설립위원·이사·감사·검사인·청산인, 「상법」 제386조제2항 및 제407조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제59조 및 제7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지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⑥ ----- ----- ----- ----- ----- ----- ----- -----.
1. ~ 20. (생략)	1. ~ 20. (현행과 같음)
21. 제109조를 위반하여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	21. 제109조 또는 제109조의2----- ----- --
22. ~ 44. (생략)	22. ~ 44. (현행과 같음)
⑦ ~ ⑨ (생략)	⑦ ~ ⑨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6조(한도초과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 ① · ② (생략) <u><신설></u>	제16조(한도초과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자기 주식을 소각함에 따라 동일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5조제1항·제3항 또는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주식의 보유한도(지방은행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목의 절차를 모두 완료하여야 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15조제1항·제3항 또는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은행 주식의 보유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것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완료할 것.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15조제3항 또는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조치 2)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

현행	개정안
③ 금융위원회는 동일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생략) 제53조의2(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제재 등) ① ~ ⑤ (생략) ⑥ 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하여는 제16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5조의9(이행강제금) ① 금융위원회	<u>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15조제1항·제3항 또는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u> 2.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주식의 보유 한도(지방은행의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주식의 보유 한도를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보유 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 ----- -----.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53조의2(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제재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6조제4항-----. 제65조의9(이행강제금) ① -----

현행	개정안
는 제16조제3항·제16조의2제5항·제16조의3제5항·제16조의4제5항 또는 제53조의2제2항에 따른 주식처분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정한 기간 이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그 처분하여야 하는 주식의 장부가액에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제16조제4항-- ----- ----- ----- ----- -----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0조(한도초과 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 ①·② (생략) <신설>	제10조(한도초과 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은행지주회사가 자기주식을 소각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8조제1항·제3항 또는 제8조의2 제1항에 따른 주식의 보유한도(지방은행지주회사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목의 절차를 모두 완료하여야 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

현행	개정안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	내에 제8조제1항·제3항 또는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은행지주회사 주식의 보유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것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완료할 것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8조제3항 또는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조치 2)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8조제1항·제3항 또는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 2.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주식의 보유한도(지방은행지주회사의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주식의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제2항 또는

현행	개정안
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생략) 제57조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제재 등) ① ~ ⑤ (생략) ⑥ 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하여는 제10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9조의2(이행강제금) ① 금융위원회는 제8조의3제5항·제10조제3항·제10조의2제5항·제18조제3항·제22조제9항·제57조의3제2항 또는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그 정한 기간 이내에 당해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매 1일당 그 처분하여야 하는 주식의 장부가액에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제7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1의2. (생략) 2. 제10조제3항에 의한 금융위원회의 명령을 위반한 자	제3항----- ----- ----- -----.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57조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제재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0조제4항-----. 제69조의2(이행강제금) ① -----제10조제4항----- ----- ----- ----- ----- -----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2조(과태료) ① ----- ----- -----. 1. 1의2. (현행과 같음) 2. 제10조제4항----- -----

현행	개정안
3. ~ 12. (생략) ②·③ (생략)	3. ~ 1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4조(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① ~ ③ (생략)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주주의 감자(減資)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동일계열 금 융기관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금 융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 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제6항의 기준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야 한다. ⑤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다 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려면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시 금융위 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2. (생략) ⑥ 금융위원회는 제1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동일계열 금융기관에 대하여 승인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이하 “초과소유요건”이라 한다) 을 심사하여야 한다.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그 금융기관에 자료를 요 구할 수 있다.	제24조(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① ~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⑤ ----- ----- -----제1항 ----- -----. 1. 2. (현행과 같음) ⑥ -----제1항 또는 제5항- ----- ----- ----- -----. -----.

현행	개정안
1.·2. (생략) ⑦ 금융위원회는 제1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알려야 한다. ⑧ 금융위원회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제1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초과소유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⑨ (생략) <신설>	1.·2. (현행과 같음) ⑦ -----제1항 또는 제5항----- ----- ----- -----. ⑧ ----- ---제1항 또는 제5항----- ----- -----. ⑨ (현행과 같음) 제24조의2(초과소유 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 ① 동일계열 금융기관은 제24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여 소유(이하 “초과소유”라 한다)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동일계열 금융기관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초과소유하고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제24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의 소각 또는 다른 주주의 감자(減資)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회사의 주식

현행	개정안
제24조의2(시정조치 등) ① 금융위원회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제24조제1항·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에는 그 동일계열 금융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 5. (생략) ② 동일계열 금융기관은 제24조제1항·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을 초과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른 회사 주식의 초과소유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완료할 것. 다만, 다른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여 다른 회사의 주식을 초과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가. 제15조제1항·제5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조치 나. 제15조제1항·제5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 제24조의3(시정조치 등) ① -----제24조제1항·제5항 또는 제24조의2제2항----- 1. ~ 5. (현행과 같음) <삭제>

현행	개정안
<u>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u> 제24조의3(이행강제금) ① 금융위원회는 제24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그 정한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매 1일당 그 처분하여야 하는 주식의 장부가액(帳簿價額)에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제24조의4(다른 법률과의 관계) (생략) 제27조(벌칙) 금융기관의 임원, 관리인 또는 청산인(이하 “금융기관의 임원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략) 4. 제24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주식을 소유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정하여진 기	제24조의4(이행강제금) ① ----- --제24조의3제1항제5호----- ----- ----- -----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4조의5(다른 법률과의 관계) (현행 제24조의4와 같음) 제27조(벌칙)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제24조제1항·제5항 또는 제24조의2제2항----- ----- 소유한-----

현행	개정안
<u>간 내에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u> 제28조(과태료) ① 금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21. (생략) 22. <u>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하여진 기간 내에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u> 23. <u>제2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u> <u><신설></u> ② 금융기관의 임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략) <u><신설></u> ③ (생략)	제28조(과태료) ① ----- ----- -----. 1. ~ 21. (현행과 같음) <u><삭제></u> 23. <u>제24조의2제1항</u>----- ----- ----- ----- 24. <u>제2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하여진 기간 내에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u> ② ----- ----- -----. 1. ~ 3. (현행과 같음) 4. <u>제24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보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u> ③ (현행과 같음)

□ 현행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은 동일인(비금융주력자 포함)이 보유할 수 있는 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한도를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같이 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보유 한도를 두는 것은 대주주에 의한 은행의 사금고화를 방지하고, 특히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 은행을 지배하여 자기 계열사에 부당한 신용공여를 하거나 리스크를 전이하는 것을 방지하는 금산분리를 실현하려는 취지임.

□ 구체적으로 보면, 「은행법」 제15조¹⁾ 및 「금융지주회사법」 제8조²⁾

- 1) 「**은행법**」 제15조(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① 동일인은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3항 및 제16조의2제3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부 또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가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2. 지방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내에서 보유하는 경우
-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동일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한도를 각각 초과할 때마다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은행업의 효율성과 건전성에 기여할 가능성, 해당 은행 주주의 보유지분 분포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각 호에서 정한 한도 외에 따로 구체적인 보유한도를 정하여 승인할 수 있으며, 동일인이 그 승인받은 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려는 경우에는 다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한도(지방은행의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서 정한 한도)
 2. 해당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5
 3. 해당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3
- 2) 「**금융지주회사법**」 제8조(은행지주회사주식의 보유제한 등) ① 동일인은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3항 및 제8조의2제3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부 또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가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2. 금융지주회사가 지배하는 당해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3. 지방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 이내에서 보유하는 경우
- ③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인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한도를 각각 초과할 때마다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은행업의 효율성과 건전성에 기여가능성, 당해 은행지주회사 주주의 보유지분 분포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각호에서 정한 한도외에 별도의 구체적인 보유한도를 정하여 승인할 수 있으며, 동일인이 그 승인받은 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한도(지방은행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서 정한 한도)
 2. 당해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5

는 동일인³⁾은 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도록 하되,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얻어 최대 33%까지 보유할 수 있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

○ 비금융주력자⁴⁾에 대해서는 금융주력자인 동일인에 비해 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한도를 더욱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 비금융주력자는 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4%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으

-
3. 당해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3
- 3) 「은행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동일인”이란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 4) 「은행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비금융주력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동일인 중 비금융회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이 아닌 업종을 운영하는 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자의 자본총액(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액이 동일인 중 회사인 자의 자본총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25 이상인 경우의 그 동일인
- 나. 동일인 중 비금융회사인 자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2조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의 그 동일인
-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로서 가목 또는 나목의 자가 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동일인이 자기 또는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소유하거나 계약 등에 의하여 의결권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의 그 투자회사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 1)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 지분을 보유하는 유한책임사인 경우(이 경우 지분계산에 있어서 해당 사원과 다른 유한책임사원으로서 해당 사원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 2)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무한책임사인 경우[다만,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무한책임사원이 다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비금융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에 투자함으로써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해당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해당 사원과 다른 유한책임사원으로서 해당 사원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이 그 다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 3) 다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속하는 각각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취득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지분의 합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 마. 라목에 해당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한 자 중 이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투자목적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취득·보유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의 해당 투자목적회사

나, 이를 초과한 부분에 대한 의결권 미행사를 조건으로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얻어 예외적으로 10%까지 보유할 수 있음⁵⁾.

- 동일인이 이러한 주식보유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은 초과 보유분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고, ‘지체없이’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조치할 의무를 부과⁶⁾하고 있음.

- 5) 「**은행법**」 제16조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① 비금융주력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서 제외되어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자로서 그 제외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는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지방은행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금융주력자가 제1항에서 정한 한도(지방은행인 경우는 제외한다)를 초과하여 보유하려는 은행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재무건전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한도까지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 「금융지주회사법」 제8조의2도 은행지주회사에 대해 위 규정과 동일한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음.
- 6) 「**은행법**」 제16조(한도초과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 ① 동일인이 제15조제1항·제3항 또는 제16조의2제1항·제2항에 따른 주식의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제15조제1항·제3항 또는 제16조의2제1항·제2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지체없이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발행된 은행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 은행의 주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동일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5조제1항·제3항에 따른 주식의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절차를 모두 완료하여야 하며, 그 완료 전까지는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에 대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15조제1항·제3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은행 주식의 보유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것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완료할 것.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15조제3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조치
2) 제15조제1항·제3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
2.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주식의 보유한도(지방은행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초과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주식의 보유한도 이내에서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목의 절차를 모두 완료하여야 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은행 주식의 보유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것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완료할 것.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조치
2)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
3.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주식의 보유한도(지방은행의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주식의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지체 없이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동일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 예외적으로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⁷⁾이 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 주식으로 전환되어 주식보유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5영업일 이내에 초과 보유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6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의 사후승인을 받거나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
- 이와 같은 조치를 완료하기 전에는 초과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금지됨.

○ 주식보유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 위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처분하는 것을 명할 수 있음.

[표 1]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한도 관련 규제 현황

구분	주요 내용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동일인 규제	· (규제대상) 동일인 → 은행(지주회사) * 동일인이 정부·예보·금융지주회사인 경우 제외 · (주식보유 한도) 10% 이내 *지방은행(지주회사): 15% 이내 · (추가보유 요건) 금융위 사전승인을 얻어 10%, 25%, 33% 초과 보유 가능
비금융주력자 규제	· (규제대상) 비금융주력자 → 은행(지주회사) · (주식보유 한도) 4% 이내 *지방은행(지주회사): 15% 이내 · (추가보유 요건) 초과 주식 의결권 미행사를 조건으로 금융위 사전승인을 얻어 10% 이내 보유 가능
한도 초과 시 조치	· (일반적인 경우) 한도 초과 주식 의결권 행사 금지, 지체없이 한도에 적합하도록 조치 · (예외)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 은행(지주회사) 주식으로 전환되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아래 절차 모두 이행 (이행 완료 전에는 초과 보유 주식 의결권 행사 금지) ① 초과 보유사실 금융위 보고(5영업일 이내), ② 금융위 사후승인을 받거나 한도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6개월 이내) *단, 지방은행(지주회사)은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 · (미이행 시)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한도 초과 주식 처분 명령

그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금융지주회사법」 제10조도 은행지주회사에 대해 위 규정과 동일한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음.

7)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예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식으로 전환된다는 조건이 붙은 사채(「은행법」 제33조)

□ 한편, 「보험업법」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산업구조개선행법”이라 함)은 보험회사(보험업법) 또는 동일계열 금융기관(금융산업구조개선행법)이 보유할 수 있는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한도를 제한하고 있음.

○ 보험회사의 다른 회사 주식보유 한도를 제한하는 취지는 보험회사의 자산이 특정 기업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여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고, 동일계열 금융기관의 다른 회사 주식보유 한도를 제한하려는 취지는 금융회사가 그 자산을 활용하여 비금융회사를 지배하거나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 구체적으로 보면, 「보험업법」 제109조⁸⁾는 보험회사는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되,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 등을 받은 자회사⁹⁾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 다만, 위와 같은 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 제한 또는 법률에 따른 한도 적합 조치 의무가 부여되지 않고 있음.

8) 「보험업법」 제109조(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 제한) 보험회사는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다만, 제115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승인이 의제되거나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보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자회사의 주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9) 「보험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8. "자회사"란 보험회사가 다른 회사(「민법」 또는 특별법에 따른 조합을 포함한다)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의 그 다른 회사를 말한다.

[표 2] 보험회사 주식보유한도 관련 규제 현황

구분	주요 내용 (「보험업법」)
규제 내용	· (규제대상) 보험회사 → 다른 회사 · (주식보유 한도) 15% 이내 · (예외) 금융위 사전승인 등을 얻어 자회사로 소유하는 경우
위반시 조치	· 법률에 따른 의결권 제한 또는 한도 적합 조치 의무 없음.

□ 다음으로,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제24조¹⁰⁾는 동일계열 금융기관¹¹⁾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① 5% 이상, ② 10% 이상, ③ 15% 이상을 소유하고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그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거나, ④ 20%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10)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① 금융기관(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및 그 금융기관과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기관(이하 “동일계열 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그 금융기관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인가·승인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2.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고 동일계열 금융기관이나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속하는 기업집단이 그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동일계열 금융기관이나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속하는 기업집단이 그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하고 동일계열 금융기관이나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속하는 기업집단이 그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주주의 감자(減資)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동일계열 금융기관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제6항의 기준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려면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5
2.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3

11) 금융기관 및 그 금융기관과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기관을 의미

에는 각각 미리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음.

- 다만, 다른 주주의 감자(減資)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¹²⁾로 위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일정한 기간¹³⁾ 내에 금융위원회의 사후승인을 얻어야 함.
 - 위의 승인을 얻은 경우라도,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 주식의 25% 또는 33%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려면 다시 금융위원회의 별도승인을 얻어야 함.
- 금융위원회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이를 위반하여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유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의 처분명령을 포함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동일계열 금융기관은 소유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한 다른 회사의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¹⁴⁾.

1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다른 회사의 주식소유승인기준 등) ③법 제24조제4항 전단에서 “다른 주주의 감자(減資)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주주의 감자(減資) 또는 주식처분
2.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3. 유증(遺贈)에 따라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4.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1항에 따른 증권인수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5.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법령에 따른 업무 또는 자산운용의 범위에서 긴급하게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13)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다른 회사의 주주총회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

14)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시정조치 등) ① 금융위원회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제24조제1항·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에는 그 동일계열 금융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계획의 제출 요구 또는 그 계획의 수정 요구
2. 동일계열 금융기관에 대한 주의 또는 경고
3. 위반행위에 관련된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 또는 문책의 요구
4. 위반행위에 관련된 임원의 해임권고 또는 직무정지의 요구
5. 소유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명령

② 동일계열 금융기관은 제24조제1항·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

[표 3] 동일계열 금융기관 주식보유한도 관련 규제 현황

구분	주요 내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
규제 내용	· (규제대상) 동일계열 금융기관 → 다른 회사
	· (사전승인) 아래의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 필요 ① 5%, ② 10%, ③ 15% 이상을 소유하고 그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④ 20%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 (사후승인) 다른 주주의 감자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 ¹⁵⁾ 내에 금융위원회의 승인 신청 필요
	· (별도승인) ① 25%, ② 33% 이상을 소유하려는 경우
시정조치 등	· (시정조치)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 ① 법 위반상태 시정을 위한 계획 제출·수정 요구 ② 동일계열 금융기관 주의·경고, 임직원 주의·경고·문책요구, 임원 해임 권고·직무정지요구 ③ 소유한도 초과 주식 전부 또는 일부 처분명령 · (의결권 제한) 한도 초과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

□ ‘자기주식의 소각’은 회사가 이미 발행한 주식을 주주로부터 다시 재취득하여 보유하게 된 주식을 소각¹⁶⁾하는 행위를 의미함.

○ 회사가 배당가능이익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게 되면 소각한 주식에 해당하는 이익을 주주에게 반환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¹⁷⁾한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주주환원 정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음.

○ 국내 상장기업의 자기주식 매입 및 소각금액 현황을 보면, 2022년 매입금액 6.5조원, 소각금액 3.1조원에서 2024년 매입금액 18.8조원,

의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5)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다른 회사의 주주총회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

16) 주식의 소각이란 회사의 존속중에 특정한 주식을 절대적으로 소멸시키는 회사의 행위를 의미함.

17) 자사주를 소각하면, 발행 주식의 수가 감소하므로, 기존 주주 가치(지분율)가 상승하며, 주식 1주당 순이익과 순자산가치 등 주당 지표가 개선되고, 주가가 오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소각금액 13.9조원으로 급증하였고, 2025년의 경우 1월부터 7월까지
매입금액과 소각금액은 각각 16조원, 18.3조원을 기록하였음.

[표 4] 국내 상장기업 자기주식 매입·소각 금액 추이

(단위: 조원)

구 분	2022	2023	2024	2025년 1월~7월
자기주식 매입금액	6.5	8.2	18.8	16.0
자기주식 소각금액	3.1	4.8	13.9	18.3

(자료: 한국거래소, 월간 기업가치 제고 현황(2025년 7월))

□ 그런데, 은행(지주회사) 또는 다른 회사가 자기주식을 소각하게 되면
발행주식 총수가 감소하면서 기존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지분율이 상
승하여 현행 「은행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인, 보험회사, 동일
계열 금융기관의 보유주식 한도 제한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최근 (지방)은행지주회사가 주주환원 차원에서 자사주를 매입·소각
하는 과정에서 동일인(해당 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이 보유한 은행
지주회사의 지분율이 「금융지주회사법」에서 제한한 15%¹⁸⁾를 초
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전에 해당 동일인이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한 사례가 발생¹⁹⁾한 바 있음.

18) 동일인이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한도는 10%(금융주력자) 또는 4%(비금융주력자)이
나, 지방 은행(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5%까지 보유할 수 있음.

○ 동일계열 금융기관에 해당하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경우에도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매입·소각함에 따라 두 보험회사가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의 합산 지분율이 「금융산업구조개선법」에서 제한한 10%를 초과할 우려가 제기되어 해당 지분 중 일부를 매각²⁰⁾한 바 있음.

- 삼성화재도 주주환원 차원에서 자사주를 매입·소각(2025. 4. 30.)하였는데, 이로 인해 삼성생명의 삼성화재에 대한 지분율이 15.43%로 상승하게 됨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²¹⁾에 따라 삼성생명의 삼성화재에 대한 자회사 소유를 승인한 바 있음²²⁾.

○ 이와 같이 은행(지주회사) 또는 회사가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해당 주식을 보유한 동일인, 보험회사, 동일계열 금융기관 등이 법정 한도 초과를 해소하기 위해 초과 보유 주식을 ‘지체없이’ 시장에 매각하는 경우, 자기주식 소각을 통한 주주환원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19) 조선일보, ‘자사주 소각했더니 대주주는 주식 팔아야... 은산분리 규제에 iM·JB금융 밸류업 난감’, 2025. 7. 9.

20) 2025. 2. 12. 삼성생명, 삼성화재의 타법인주식 및 출자증권 처분결정 자율공시(한국거래소 공시) 참조

21) 「**보험업법**」 제109조(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 제한) 보험회사는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 지분을 포함한다) 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다만, 제115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승인이 의제되거나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보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자회사의 주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2) 2025. 4. 1. 삼성생명의 기타 경영사항 자율공시(한국거래소 공시) 참조

□ 이에 개정안은 은행(은행지주회사) 또는 다른 회사가 자기 주식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주식보유자²³⁾가 주식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해당 은행 또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초과 보유 주식에 대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금융위원회의 사후승인을 얻거나 처분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하려는 것임.

○ 구체적으로 보면, 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의 경우 현행 규정은 동일인(비금융주력자 포함)이 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한 은행(지주회사) 주식에 대해 ‘지체없이’ 한도에 적합하도록 조치할 의무를 부여²⁴⁾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가 자기주식을 소각하여 동일인이 한도를 초과하여 은행(지주회사)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사후승인을 얻거나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음²⁵⁾.

23) 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의 경우 동일인(비금융주력자 포함), 다른 회사의 경우 보험회사 또는 동일계열 금융기관

24)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 은행(지주회사) 주식으로 전환되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별도 예외 존재(표1 참조)

25) 다만, 지방 은행(지주회사)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사후승인 없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조치할 의무만 규정함

[표 5] 동일인의 은행(지주회사) 주식 보유 한도 초과시 조치 비교

구분	주요 내용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현행	· 의결권 행사 금지 · <u>지체없이</u> 한도에 적합하도록 조치
↓	
개정안	<은행(지주회사)이 자기주식을 소각하여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 의결권 행사 금지(현행과 같음) · (사후승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금융위 승인 또는 · (유예기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 ※ 지방 은행(지주회사)의 경우 사후승인 없이 유예기간만을 규정 ※ 그 외의 경우는 현행과 동일

- 보험회사의 경우 개정안은 일반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 의결권의 행사를 금지하고 지체없이 한도에 적합하게 할 의무를 신설하되, 다른 회사가 자기주식을 소각하여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도에 적합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규정²⁶⁾하고 있음.

26) 다른 개정안과 달리 「보험업법」 개정안은 별도의 사후승인 제도를 신설하고 있지 않음.

[표 6] 보험회사의 다른 회사 주식 보유 한도 초과시 조치 비교

구분	주요 내용 (「보험업법」)
현행	· 법률 상 의결권 행사 금지 또는 한도에 적합하도록 조치할 의무 없음.



개정안	<일반적인 경우> · 의결권 행사 금지 · 지체없이 한도에 적합하도록 조치 <다른 회사가 자기주식을 소각하여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 의결권 행사 금지 · (유예기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한도에 적합하도록 조치 ※ 사후승인 제도 없음.
-----	---

- 동일계열 금융기관의 경우 현행 규정은 다른 주주의 감자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회사 주식을 한도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해당 회사의 최초 주주총회일 이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사후승인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다른 회사가 자기주식을 소각하여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한도를 초과하여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금융위원회의 사후 승인 또는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표 7] 동일계열 금융기관의 다른 회사 주식 보유 한도 초과시 조치 비교

구분	주요 내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
현행	· 의결권 행사 금지 · 다른 주주의 감자 등 부득이한 사유²⁷⁾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금융위원회 사후승인 신청 필요
↓	
개정안	<다른 회사가 자기주식을 소각하여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 의결권 행사 금지(현행과 같음) · (사후승인, 유예기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금융위원회의 사후승인을 얻거나 한도에 적합하도록 조치 ※ 그 외의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금융위원회의 사후승인을 얻거나 한도에 적합하도록 조치

□ 개정안과 같이 자기주식 소각으로 인해 발생하는 「은행법」 등의 주식보유한도 초과 상황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사후승인 제도를 신설하거나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치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할 경우, 짧은 기간 내에 한도 초과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대량의 주식 매물이 시장에 유통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가하락 등의 상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기업 입장에서라도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상황에

27)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다른 회사의 주식소유승인기준 등) ③법 제24조제4항 전단에서 “다른 주주의 감자(減資)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주주의 감자(減資) 또는 주식처분
2.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3. 유증(遺贈)에 따라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4.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1항에 따른 증권인수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5.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법령에 따른 업무 또는 자산운용의 범위에서 긴급하게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대한 우려가 낮아지면서, 주주 환원을 위한 자기주식 소각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금융위원회도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 다만, 개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첫째, 개정안 중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등 2건의 개정안은 자기주식 소각에 따른 사유의 경우 한도초과 상황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사후승인 제도를 신설²⁸⁾하고 있는데, 현재도 사후승인제도가 있는 「금융산업구조개선법」상 주주 감자 등 기타사유도 위 2개 법률에 사후승인 대상으로 추가 반영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현행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및 동법 시행령은 다른 주주의 감자 등 부득이한 사유²⁹⁾로 주식보유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다른 회사의 주주총회일 전일까지 금융위원회에 사후승인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8) 「보험업법」 개정안에는 별도의 사후승인제도를 두고 있지 않음.

29)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다른 회사의 주식소유승인기준 등) ③법 제24조제4항 전단에서 “다른 주주의 감자(減資)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주주의 감자(減資) 또는 주식처분
2.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3. 유증(遺贈)에 따라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4.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1항에 따른 증권의 인수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5.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법령에 따른 업무 또는 자산운용의 범위에서 긴급하게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사후승인 제도를 신설하는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그 사유를 ‘자기주식 소각’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현행 「금융산업구조개선법」상의 부득이한 사유도 두 법률에 신설되는 사후승인 사유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금융위원회의 의견이 제시되었으므로, 이를 감안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둘째, 개정안 중 「보험업법」의 경우 다른 개정안과 달리 자기주식 소각에 따른 한도초과 상황 외에도 일반적으로 한도가 초과되는 상황에서의 의결권 제한, 한도에 적합하도록 조치할 의무를 신설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내용을 별도로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보험회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자회사 보유 승인 없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5% 이상 소유를 금지³⁰⁾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³¹⁾하고 있을 뿐, 한도 초과 보유 주식에 대한 별도의 의결권 제한이나 한도에 적합하도록 조치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음.

30) 「**보험업법**」 제109조(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 제한) 보험회사는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 지분을 포함한다) 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다만, 제115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승인이 의제되거나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보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자회사의 주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1) 「**보험업법**」 제209조(과태료) ① 보험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 제109조를 위반하여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

⑥ 보험회사의 발기인·설립위원·이사·감사·검사인·청산인, 「상법」 제386조제2항 및 제407조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제59조 및 제7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지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1. 제109조를 위반하여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

- 따라서, 자기주식 소각 외에도 일반적으로 위의 한도를 초과한 주식을 보유하게 된 경우 의결권 제한 및 한도에 적합하도록 조치의무를 부여하는 개정안의 내용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에 대한 다른 회사 주식보유 제한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문 의 처
02)6788-5106